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여수시도시공사 제정 2015.12.14. 규정 제92호

제정 2017.11.17. 규정 제2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임금피크제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시점까지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2. ‘기준급여’라 함은 감액대상이 되는 임금으로 호봉제 직원의 경우는 보수규정상의 봉급을, 연봉제 직원의 경우는 연봉제 시행규정의 기본연봉을 말한다.
3. ‘전환기준일’이라 함은 정년퇴직일 3년전인 날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은 공단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으로 한다.

② 적용기간은 인사규정 제32조 제2항의 6월 말일, 12월 말일 정년퇴직일을 각각 구분하여 정년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부터 정년퇴직시 까지로 한다. 단,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인 직원은 제외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및 통보) ① 대상자 선정은 년 2회 실시한다.

② 이공단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 에게 전환기준일 이전에 임금피크제 적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복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적용직전의 직급을 기준으로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직위 및 직급 등 부여) 적용자의 직위, 직급, 직무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과 동일한 직위, 직급, 직무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보수)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 감액율은 다음과 같다.

1. 적용 1년차는 기준급여의 10%를 감액 지급한다.
2. 적용 2년차는 기준급여의 15%를 감액 지급한다.
3. 적용 3년차는 기준급여의 20%를 감액 지급한다.

② 보수규정에 의한 기본급 이외의 수당 및 성과급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제1항의 감액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

③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중 임금인상율, 성과급 지급율은 일반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년도별 승급은 인정한다.

제8조(여비)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공단 업무로 출장시 여비에 관한 사항은 여비규정에 의하며, 여비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직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퇴직급여금) ① 퇴직급여금 산출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따른다.

②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퇴직금은 전환기준일에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하고, 임금피크 적용기간중 1년단위로 정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 설립 일부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여수시도시공사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으로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